원외탕전 공동이용 협약서

세성한의원부설 원외탕전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협약서

(이하 "갑"이라한다)과 세성한의원(이하 "을"이라한다)은 다음과 같이 원외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탕전실 공동이용 및 "갑"이 "을"에게 "갑"의 탕전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른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탕전이라 함은 병원 및 한의원의 조제지시서 및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재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약침 및 약품제형을 조제, 포장, 배송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2조 [탕전실 공동이용 및 위탁]

① "갑"은 제②항에서 지정한 탕전실을 공동이용하여 탕전업무를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동 이용대상 탕전실 : 세성한의원부설 원외탕전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 71)

제3조 [위탁 업무의 범위]

① "갑"은 "을"에게 "갑"의 처방에 따른 약침 및 한약제제의 탕전, 조제 포장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가. "갑"의 처방에 따른 약침 및 한약제제의 가공, 탕전, 조제 포장 업무

나. 위 가호 각 업무에 사용될 한약재(원재료)의 구입 및 제형 등의 가공, 탕전, 포장에 필요한 부재료, 부자재의 구매업무

다. 위 나 호와 같이 구입된 원재료 및 부재료, 조제 완료 약품, 부자재의 관리업무.

② "갑"은 약침 및 한약제제의 조제, 탕전을 위해 필요한 처방전을 사전에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위탁에 따른 한약제제의 최종 검사/포장 및 배송에 관하여는 "갑"의 별도 요구 및 합의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을"이 최대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공동 탕전에 필요한 기계설비, 환기 및 배수시설 등 모든 조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탕전업무의 경우, "을"은 탕전실 등에 한약사를 상주시켜 "갑"으로부터 받아 놓은 조제지시서 및 처방전에 따라 정확히 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안전성 및 효능이 우수한 약재를 구입·사용하여야 하며, 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탕전을 의뢰한 병원 또는 한의사의 조제지시서, 처방전, 조제작업일지, 탕전 조제된 한약제제의 배송일지 등 관련서류를 작성 보관한다.

제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설치한 탕전실을 공동 이용함에 있어 탕전실 공동이용 보수(탕전 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및 원부자재 비용을 매월 말까지 "을"에게 결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조제지시서 및 처방전 의뢰기준]

① "갑"은 컴퓨터 통신이나 모사전송(팩스)을 통해 "을"에게 조제지시서 및 처방전을 교부함으로써 탕전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치법제가 필요한 약재의 경우 "갑"은 그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여 원활한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갑"이 의뢰한 처방전 중에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경우, 탕전조제 하기가 난해한 처방의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용되는 경우 등 탕전조제가 불가능 하거나 부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을"은 조제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운송/인수/검수]

① 탕전 조제된 한약제제의 최종 검사, 포장, 배송에 관하여는 "갑"의 요구와 "을"의 승낙에 의한다. 단, 배송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 요구가 없는 한 탕전 조제된 한약제제의 인도장소는 "갑"의 영업장소로 하되 배송과정에서 한약제제의 분실, 변질, 손상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재발송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외관상의 하자나 수량부족 등을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하여 상품을 인수한 다음날까지 "을"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즉,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상대방에게 계약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한 경우,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사(묵시의 갱신)

제9조 [책임의 한계]

① "을"은 "갑"이 처방의뢰한 탕전업무에 관하여 조제지시서 또는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조제하여야 하며 조제 관련기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만약 탕전과 관련된 민원 발생시 검사 및 그에 따른 관련기록이 구비된 경우 "을"은 무과실로 간주되나 검사결과 및 관련기록이 미비된 경우 또는 조제지시서나 처방전의 내용과 다르게 탕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갑"과의 협의에 따라 민원발생원인을 규명한 후, 귀책범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갑"은 조제지시서 또는 처방전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이상증세, 피해발생 및 한약제제로 인한 복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미비로 인한 환자의 민원발생에 관하여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갑"에게 인도된 이후,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한 한약제제의 가치저하 및 변질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도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본질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단, 상대방으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이행을 최고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나. 당사자 일방에게 재정상의 파산, 행정처분 등 본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당사자 일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②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해지사유가 일시적 사유로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해지와 관련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 기타 계약해지를 유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상당기간 계약해지를 유예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유보사항 및 관할]

① **본 계약은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제12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계약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갑" 의 료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대 표 :

"을" 의 료 기 관 명 : 세성한의원
사업자등록번호 : 122-96-07437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96 2층
대 표 : 송 문 영

[별지 제2호 서식]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

공동이용 신 청 의료기관	명칭		종류	
	주소			
	개설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탕전실 설치 의료기관	명칭	세성한의원	종류	한의원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165 대림상가2층		
	개설자	송문영	주민등록번호	640727-1520517
	면허종류	한의사	면허번호	제 5408 호

탕전실 현황	□ 원내 탕전실 ■ 원외 탕전실				
	원외 탕전실인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89번길 71			
	전화번호	070-5029-2870 fax:031-573-2533			
	종사자	□ 한의사 (명)		■ 한약사 (1 명)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고병일	제455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공동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의 계약 서류 사본 2. 공동 이용되는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공동 이용되는 탕전실이 원외 탕전실인 경우, 원외탕전실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와 원외 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사본 (원외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해당 관할청에서 발급 받음)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신고인 (개설자)	성명(법인명)	송문영	생년월일	1964.07.27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165, 103-1403		
	면허종류	한의사	면허번호	제 5408 호
의료기관	명칭	세성한의원	종류	한의원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196,대림상가2층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응급과		
원외탕전실 현황	주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89번길71 (사노동)		
	전화번호	070-5029-2870~2		
	종사자	□ 한의사 (명)	■ 한약사 (1 명)	
		성명 /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고병일	제455호
변경사항	변경 전	한약사:김영주		
	변경 후	한약사:고병일		

위와 같이 확인함

2023 년 09 월 12 일

부 평 구 보 건 소 장(인)

제 455 호

한약사면허증

성 명: 고병일

주민등록번호: 730830 - 1037827

근 거: 약사법 제3조의2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2003. 4. 3.

보건복지부장관

* 원외탕전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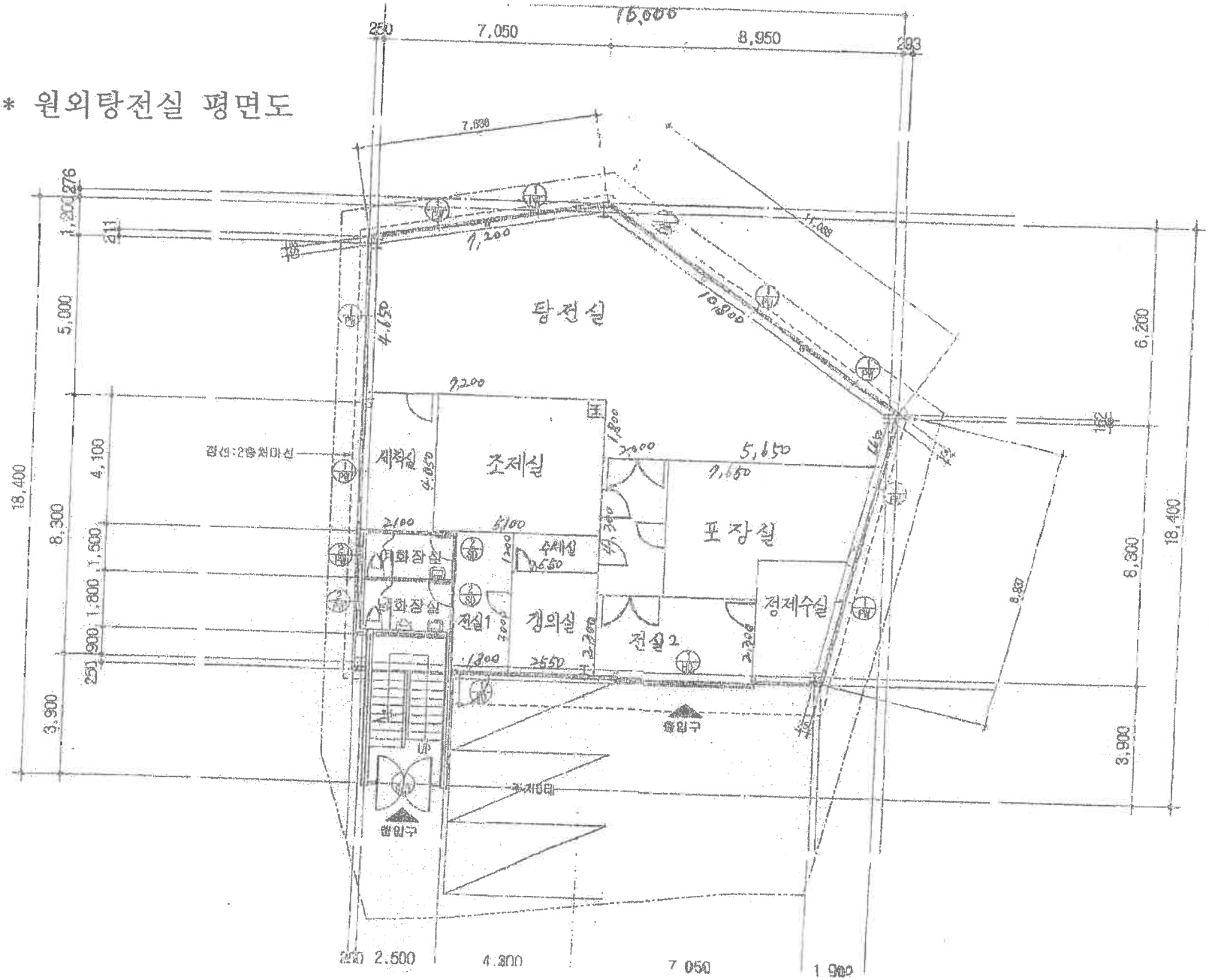
15,000
7,050
8,950
250
293
탕전실
조제실
세척실
포장실
정제수실
수세실
전실1
전실2
경의실
여화장실
남화장실
출입구
조제대
18,400
8,300
5,000
4,100
1,500
1,800
900
3,900
6,200
2,500
4,300
7,050
1,900

원외탕전실의 구조설명서

① 조제실 (20.60m²)

약장, 조제대, 냉장고, 책상을 배치하여 처방전 수취와 확인 및 조제를 할 수 있는 공간

② 작업실(탕전실) (81.10m²)

세척기, 약탕기, 포장기, 농축기, 추출기 등을 배치하여 액상형태의 제형을 만들 수 있는 공간.

③ 작업실(포장실) (24.30m²)

파우치 형태의 제형들을 포장할 수 있는 공간.

④ 작업실(조제실) (20.60m²)

원에서 처방된 처방전대로 약제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약장과 한약재를 보관 조제행위가 행해지는 공간.

⑤ 세척실 (08.50m²)

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약재 및 탕전기에 따른 비품들을 세척하기 위한 공간.

⑥ 정제수실 (08.20m²)

원외탕전 내부 세척실을 제외한 탕전실 내부에 조제용 정제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제수씨스템을위한 공간.

⑦ 갱의실 (07.60m²)

탁자와 의자, 옷장, 사물함을 배치하여 작업 전, 후 옷을 갈아입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⑧ 수세실 (07.60m²)

갱의 후 탕전실 진입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위생 세척하기 위한 공간

탕전실 원외이용 내역 확인서

의료기관	명칭	세성한의원	종류	한의원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96,2층 (부평동,대림상가)		
	진료과목	한방각과	개설신고일자	1990.05.24
개설자	성명 (대표자)	송문영	생년월일	1964.07.27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65,103-1403 (산곡동)		
	면허종류	한의사	면허번호	제5408호
탕전실 현황	■1.원내 탕전실		■ 2.원외 탕전실	
	주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89번길 71(사노동)		
	종사자	고병일	생년월일	1973.08.30
	면허종류	한약사	면허번호	제455호

위와 같이 확인함

2023년 09 월 12 일

부 평 구 보 건 소 장 (인)

제 1990-3540021-00008 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명 칭	세성한의원	종 류	한의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96, 2층 (부평동, 대림상가)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응급과	개설신고일자	1990년05월24일
개설자	성명(법인명)	송문영	생년월일	1964년07월27일
	주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95번길 44-2 (십정동)		
	면허종류	한의사	면허번호	제 5408 호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990년 05월 24일

부 평 구 보 건 소

문서발급번호 : 21135-20449-00920-19006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내 용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1995-12-13	보건행정과 65507 변경전:77.28m² 변경후:132.48m² 및 구조변경	
2020-03-10	○ 구분:기타, 변경전:탕전실 내부1곳, 변경후:탕전실 내부1곳,탕전실 외부1곳(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89번길71(사노동),한약사-이남원(710906)), 변경사유:탕전실 원외 신고, 변경적용일:2020.3.10	남은영
2021-07-28	○ 구분:기타, 변경전:한약사-이남원, 변경후:한약사-김영주(73.1.26,제2321호) , 변경사유:(이풀잎(세성한의원)부설원외탕전실) 한약사 변경	남은영
2023-09-12	○ 구분:기타, 변경전:한약사-김영주, 변경후:한약사-고병일(73.8.30, 제455호) 접수일:2023.9.11 , 변경사유:[이풀잎(세성한의원)부설원외탕전실] 한약사 변경 신고	남은영
	— 이 하 이 백 —	

국세청
nts.go.kr

사 업 자 등 록 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 454-91-01204

상 호 : 이풀잎(세성한의원부설원외탕전)

성 명 : 송문영 생 년 월 일 : 1964 년 07 월 27 일

개 업 연 월 일 : 2020 년 03 월 10 일

사 업 장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 71(사노동)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제조 종목 원외탕전

발 급 사 유 : 신규

공 동 사 업 자 :

E-mail : hawk530303@daum.net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20 년 03 월 11 일

남 양 주 세 무 서 장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